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13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13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백재현 · 권미혁

김철민 · 소병훈 · 윤관석

민병두 · 박홍근 · 박 정

김수민 · 유승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 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,573건으로 동 기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인 214건보다 월등히 많으며, 피해 유형도 가입비 환급 거부·지연, 과다한 위약금 요구, 허위정보 제공,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).

법률 제 호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“국제결혼중개업”을 “결혼중개업”으로, “국제결혼 실태조사”를 “결혼중개 실태조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7년에 실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<u>국제결혼중개업</u>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<u>국제결혼 실태조사</u>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의2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<u>결혼중개업</u>----- ----- ----- <u>결혼중개 실태조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